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세 가지 법리적 오류와 그 함의

2014. 12. 23.

Super:H (hjbighton@gmail.com)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
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序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도 이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 요지 보기](#)) 그러나 이 결정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세 가지 흠결이 있는 결정이다. (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2)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타당성을 사전에 전제하는 논리적 비약, (3)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과잉해석이 그 흠결들이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이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지만, 본고는 그 흠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확실하게 보이고자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그 판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 국민들의 60퍼센트가 이번 헌재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이 흠결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흠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첫째,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RO라는 부분과 통진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해야만 하고 그것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근거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이석기 등이 주도한 이른바 ‘RO’ 회합이 반민주적 가치를 내걸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 회합의 주도자들이 통진당의 “핵심 주도세력”이고 통진당 차원에서 이들을 “전당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곧 통진당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통진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수 없으며, 통진당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사실은 있어도 그 사실을 곧바로 이들에 대한 옹호·비호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석기 등의 활동이 명백히 친북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전체가 친북적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

이석기 등이 통진당의 핵심 주도세력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헌재가 엄중한 비난이 가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이석기 등의 활동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통진당의 일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서 통진당 경기도당 차원에서 문제의 회합을 개회했다. 이석기 사건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이들은 통진당 중앙당 및 전국 단위 당원들의 인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회합 참석자들 이외에는 누구도 회합의 개

최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게 비밀 유지에 매우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 통진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동부연합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그 회합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이들의 노선이 통진당 내에서도 인정을 받기 어려워 '이들만의' 노선으로밖에 남아있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현재는 통진당 내 광주전남연합과 부산울산연합도 경기동부연합의 이러한 노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석기 등이 굳이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에게조차 자신들의 회합 및 활동을 비밀에 부친 것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통진당의 주도세력이었다면 이들의 활동이 반체제적이라는 특성상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신들의 활동을 통진당 내부에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이석기 등이 이끄는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내부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당시 통진당 내 비례대표의원 경선에서 선거부정이 자행된 것은 통진당 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경기동부연합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상위 순번을 받으려고 획책한 일이었다. 그 경선 결과를 인준하는 중앙위원회가 폭력 사태까지 빚으며 파행한 이유는 통진당 내 경기동부연합 이외의 세력들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많이 가져가려는 경기동부연합 측 시도를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정말 통진당 내 타 세력과 연합하거나 이들을 장악하여 통진당을 주도했다면 이들은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쳤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것이므로 애초에 부정경선을 계획할 이유가 없다. 설령 이들이 자신들의 당 내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부정경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위원회에서 이들이 당 내 (소수) 반대파의 보이콧 시도에 전면적으로 가로막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동부연합은 굳이 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 대규모 부정경선을 실행했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통진당 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데 실패한 채 사실상 당 내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석기 등의 노선을 통진당 전체의 정책노선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물론 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가 도화선이 되어 경기동부연합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진보신당(현 노동당) 등으로 쪼개져 나가면서 경기동부연합의 통진당 내 영향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이석기 등 '문제인물'들은 통진당이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내세우지 못한 채 계속 통진당 경기도당, 즉 경기동부연합으로서 주로 활동했고 그 활동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도 계속 이어나갔다. 분당 사태 이후에도 통진당 일반 당원 대다수는 이석기 등의 '문제행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들 당원 대다수가 검찰이 처음 이석기 등을 구속했을 때 검찰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석기 등이 명백한 친북 노선을 걸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통진당 내부 중론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 2심 판결을 거치며 이석기 등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자 통진당 일반 당원 중 상당수가 당을 이탈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통진당 내 다수 인원이 이석기 등과 뜻을 같이할 수 없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언론에서는 이석기 등을 옹호하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의 목소리가 부각되었고 실제로도 그들이 통진당 내에서 가장 눈에 띄기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까지 살펴보면 통진당 전체적으로는 이석기 등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내에서도 계속 당 차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의 독자세력으로만 활동했다. 법원도 이석기 등의 형사사건 2심에서 '반국가단체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이 이들이 자인(自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현재는 통진당 내의 일부분에 불과한 이석기 등이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통진당 전체를 비민주적이라고 단정하고 그 단정을 바탕으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이 논리에 대한 반증 사례가 실존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미 나온 법원의 판단까지 뒤집으면서, 극단적인 소수과를 통진당 전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이석기 등의 활동 때문에 통진당 전체를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 미국과 쿠바도 53년간 이어진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고 화해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아직 냉전적 갈등이 실질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통진당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통진당 전체의 사법적 강제해산은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여론몰이에 의해 옹호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석기 등이 극단적인 소수과임이 인정된 이상, 그들은 형법과 국보법에 의해 그들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들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정당 전체를 해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2

둘째, 현재는 1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명확한 내용을 바로 이미 명확한 사실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을 했다. 정당해산절차는 정당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당에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고 부활도 금지시키는 극형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올바른 법리 적용을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소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이번 정당해산절차 첫머리에서부터 정당에 대한 형사소추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해산심판의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당해산심판에도 형사소송절차 대신 타 헌법재판과 마찬가지로 개연성 입증만 하면 되는 민사소송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 비약에서부터 이번 정당해산심판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정당해산심판의 성격에 맞지 않게 통진당 측의 방어권보다 법무부 측의 공격권이 더 많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현재는 또 다른 논리적 비약을 했다.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 중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있다면 그 전제는 가장 엄격하고 협소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사실이라고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어야만 정당해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도 인정하고 있듯 정당해산은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이므로 다수자·정치적 강자에 의한 소수자·정치적 약자 탄압에 악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제들을 그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실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위 1장에서 살펴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그 비약에 기대어 세부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현재는 통진당의 “숨은 강령”이 위헌적이고 통진당의 활동이 그 “은폐된 강령”을 실천

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헌적이라는 논리에 의존한다. 이석기 등의 반체제 활동을 통진당 전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석기 등의 활동이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확증이 있는 것처럼 통진당의 활동도 그렇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그 확증으로 통진당의 ‘숨은 강령’을 제시하는데, 이 모호한 개념은 현재가 논리적 약점을 덮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찾아내어 전면(前面)에 전면(全面)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현재는 위 1장에서 알 수 있듯 이석기 등의 활동의 위헌성에 대한 확증 외에 통진당 차원의 활동의 위헌성에 대한 마땅한 확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통진당의 강령에서 위헌적 요소를 찾고 통진당의 활동이 그 위헌적 강령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헌성을 갖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현재는 통진당의 성문(成文) 강령에서 위헌적 요소를 찾아낼 수 없어 그 강령이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난관에 봉착한다. 이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숨은 강령’이 통진당의 실제 강령이고 그 강령은 위헌적이라는 논리가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 논리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개하지 못했다. ‘숨은 강령’은 ‘숨은’이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본질적으로 불명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숨어 있고 왜 통진당의 성문 강령과 동등하거나 성문 강령에 우선하여 통진당 활동의 근거가 되는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숨은 강령은 비로소 통진당의 위헌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석기 등 자주파가 NL 노선을 취하고 있으니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도 북한식 대남혁명론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 이 설명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석기 등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미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데다, NL 논리와 연결고리를 배제하고 나면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왜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같은 것인지를 독립적으로 밝히지도 못한다.

이에 대해 현재는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북한식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는 노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불충분하다. 현재에 의하면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체제인데, 북한의 대남 논리가 바로 이러하므로 통진당은 곧 북한을 추종하는 숨은 강령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진당’이라는 주어를 빼고 인용된 주장을 다시 읽어 보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퍼센트의 가진 자들이 나머지 99퍼센트의 못 가진 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 부와 권력을 세습·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웬지 익숙하지 않은가? 그렇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서구 국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본주의·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요즈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요즘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협치), 속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이다.

이처럼 진보적 민주주의는 지극히 보편적인 문제의식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도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포함한 정당의 강령이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음은 인정하고 있으니, 그런 광범위한 개념을 반드시 북한과의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에 일부 내포되어 있는 사회주의 개념 역시 소련과 북한의 사회주의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녹아들어가 있는 공생과 공존의 원리일 뿐이다. 이는 대선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무상급식, 누리과정(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적극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던 원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가진 개념이 아니다.

이에 대해 현재는 다시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응수할 수 있겠으나, 현재 결정문에서는 (통진당이 아니라) NL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논리만이 설득력이 있다. NL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포함돼 있는 “민족해방...혁명”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 등의 용어는 북한에서 북한의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맞다. 이 중 세 번째의 경우 FTA와 같이 우리나라가 타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보면 북한에 대한 동조와는 무관하게 한국이 놓인 현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인식으로서의 측면이 일부 있지만, ‘예속’이나 ‘식민지 반봉건사회’ 등의 용어를 보면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석기 등 자주파=통진당’이라는 등식이 이미 부정된 이상 NL이 친북이라는 사실은 통진당이 친북 위헌정당이라는 사실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석기 등 자주파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아니고 통진당 내에서도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에, 통진당 강령에 나와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통진당 당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 즉 독점적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비판과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석기 등 극단적 소수파가 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북한과 연계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들의 노력이 통진당이 정당 차원에서 추구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공식적 해석을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논리에서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는 부분마저도 현재의 최종 결론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현재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이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한 근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사실이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통진당에 대한 비판 의견이 강해지게 한 사건들이지만, 통진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미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하는 위헌정당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논리에 따르게 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모두 위헌정당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지금은 친이계가 공천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멘소리가 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김한길 당시 공동대표가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원들의 반발에도 2014년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을 및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강행했다가 내용을 꺾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해당 정당이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강성당원들의 이권다툼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정당이 헌법질서를 부정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듯 그러한 당내 민주주의의 미확립 및 실정법 위반 등의 행위는 위반자들에 대한 형사제재와 국민들에 의한 정치적 심판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장 제한적인 수단이

어야 할 국가의 정당 강제해산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러한 사건들을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로는 물론이고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해석론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론조사의 경우 통진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통진당의 강제해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정치(精緻)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3

셋째, 현재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가 정당 외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실에 반하여 그 의사가 정당 소속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자의적 과잉해석을 했다.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두 요건인 정당기속성과 국민대표성 중 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은 국민대표성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는 것도 정당기속성이 없더라도 국민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법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무소속 의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지역구 의원은 소속 정당 이외에도 개인의 능력과 경력, 지역 관련 공약 등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됨으로써 정당으로서의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에 근거한 지역구 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기 선거에서 그 의원이 해산된 정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치적 심판은 지역구 의원이 갖는 국민대표성의 근원인 지역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그 근원 없이 정당해산만을 이유로 해당 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의원의 공무담임권 및 지역구 주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법인 동시에 정치적 월권이다.

본고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을 대리하여 그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지역구)대표성보다 정당기속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지만, 국회의원직의 안정성에 대한 법적 보장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정당기속성보다 국민대표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 이는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보는 본고의 입장을 부연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국민들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만 결정하고 그 의석들을 어떤 후보가 차지할지는 정당 내에서 정당이 주도적으로 후보별 순번을 부여함으로써 결정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은 본질적으로 정당에 기속되어 있고 그 정당을 매개로 국민을 간접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정당의 존립 근거가 무효화된 경우 해당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자신도 정당기속성과 국민대표성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당 해산 시점에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맞는다. 이는 정당이 자진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과 대조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정당의 자진해산은 해당 정당이 국민대표성을 매개하는 방법론에 대한 정치적 포기를 의미할 뿐 해당 정당 소속원들이 더 이상 어떤 형태로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정당의 자진해산은 합당, 분당 또는 재창당을 통한 새로운 정당의 결성을 위한 것이고, 그때 비례대표의원은 새로운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국민대표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자진해산한 정당 소속 비례대표의

원은 해당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당기속성은 없지만 국민대표성은 잃지 않으며, 국민대표성이 남아있으므로 의원직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국민대표성이 갖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도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했지만,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그 직위를 상실케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직위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통진당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를 갖지 않고 가져서도 안 되는 정당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국민대표성도 잃는 것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정당과 무관한 국민대표성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위 논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선관위도 한 이 판단을 현재는 법적 논리를 소홀히 하고 통진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 그리고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 정치적 논리만 활용함으로써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법리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지역구 의원 의원직 박탈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법관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해산 시 소속 정당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소속 정당이 없는 후보자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유사규정이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따라 소속 정당이 사라지더라도 지역구 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유지되고 따라서 의원직도 유지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리에 따르면 정당해산 시 소속 정당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이 유사규정인데, 그 입법취지가 의원이 정당이 해산되어도 다른 정당을 매개로 국민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 바, 강제해산된 정당은 동일한 강령과 활동을 위해 재창당할 수 없으므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정당해산심판이 정당에 대한 형사소추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 바 있는데, 형사법 원칙에 따르면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불가능하므로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정당해산심판은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형사소추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니 정당이 강제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하에서도 지금까지 확인한 해석, 즉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해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당의 해산과 의원직의 상실은 별개의 문제로서, '정당'해산심판의 '정당'에 대한 형사소추의 성격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지 않는 때문이다.

앞서 지역구 의원은 정당과 독립적으로 국민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명이 없이도 정당과 별개의 법적 존재임이 자명하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도 한 가지 논리가 추가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정당과 별개의 법적 존재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을 매개로 비로소 국민대표성을 가지므로 정당 없이 존재할 수 없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거 스스로 탈당하지만 않으면 정당에 의해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법적으로 하나의 정당에 완전히 예속된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해산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역시 한 사안의 일부로 볼 수 없고, 서로 다른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로써 여러 법리에 따르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법적으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정반대의 결정을 한 현재는 정치적인 과잉해석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한 것이다. 국민들 역시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 및 당원들 전체에게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중복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크게 세 가지 법리 오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등 경기도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라는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여 그들의 국보법 위반이 곧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보여준다는 논리를 펴므로써 부분과 전체를 동일시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이 잘못된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확하지도 않은 통합진보당의 ‘숨은 강령’을 끌어들이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의(恣意)로 북한과 연계시키고 당내 민주주의를 국가질서로 무리하게 확장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봐도 해소되기 어려운 법리오해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허점을 노출하면서까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적 비판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신(新)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 이후 공산당 관련자들 수만 명이 줄줄이 처벌된 사례를 들며 이번 결정이 불러올지도 모를 그 부작용을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체제이기를 바라는 정치학도이자 유권자로서 그 연좌제가 부디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비 법학도로서 훗날 현재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법적·정치적 반성이 그런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적 완성을 위한 뼈아프지만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현재의 이번 결정이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 의미이기 때문이다.